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7. 12. 29.
행정재무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7년 11월 22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53회 정기회 제8차 행정재무위원회('97 .12. 22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조남성)

- 가. 제안이유
 -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으로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
- 나. 주요골자
 - [별표] 위임사무중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
 - 19.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수리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(전문위원 : 이준석)

동 조례(안)의 개정은 건축물의 철거, 멸실신고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고, 건설폐기물 신고수리업무는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어 수리업무가 동장과 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됨.

4. 審査結果 : 원안 의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11. 20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으로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,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[별표] 위임사무중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

- 19.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수리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폐기물관리법 제24조
- 동법시행규칙 제10조

나. 합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라. 조례(안) : 별첨

첨 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[별표] 위임사무중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수리	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	동 장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에 기 접수되어 처리중인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무는 종전대로 구에서 처리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=====

현	행	개	정	(안)
[별표]		[별표]		
위 임 사 무		위 임 사 무		
제1호 내지 제18호(생략)		제1호 내지 제18호 (현행과 같음)		
(신설)		19. <u>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수리</u>	<u>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</u>	<u>동장</u>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12. 29

행정재무위원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1997년 11월 22일 회부

다. 상 정 일 자 : 제53회 정기회 제9차 행정재무위원회('97 .12. 24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김종박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[법률 제65406호, 대통령령 제15489호('97. 10. 1 시행), 내무부령 제717호('97. 10. 4 시행)] 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임.